

청 문 통 지 서

문서번호 직업능력개발과 - 417

시행일자 2023. 1.10.

수 신 이준혁 귀하

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	훈련교사 자격취소		
2. 당사자	성 명 (명칭)	이준혁		
	주 소	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 19길 26-3		
3. 처분의 원인된 사실		○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결격사유에 해당 확인 <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>		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훈련교사 자격취소 (사무자동화 3급)		
5. 법적 근거		○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34조(결격사유) 제3호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○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35조(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) 제1항 제2호 - 같은 법 제34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		
6. 청 문	기관명	대구지방고용노동청	담당부서명	대구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
	주 소	대구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로 392		
	일 시	2023년 02월 03일 (금) 14 : 00		
	장 소	대구고용센터 8층 소회의실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과 과장	
성 명		민 병 희		

대 구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



의견제출서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

훈련교사 자격취소

2. 당사자

성명(명칭)

이준혁

주 소

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 19길 26-3

3. 의

견

4. 기

타

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(제31조 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주소

(전화 :)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대 구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귀하

비
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